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
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(법률 제20957호, 2025. 5. 27. 공포, 2025. 11. 28. 시행)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가 신설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및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절차,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절차 신설(안 제3조제2항·제3항)

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
·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며,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·도지사와의 협의해야 함

나.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원(안 제19조)

인구감소관심지역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할 수 있고,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방

시대지원단으로부터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·허가 신청 사무에
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)”을 “(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)”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광역시, 특별자치시 및 시·군·구 중에서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제1항의 기준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하며, “인구감소지역”을 “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(이하 “인구감소지역등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.

제19조의 제목 “(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)”을 “(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5호, 제6호,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인구감소지역”을 각각 “인구감소지역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구감소관심지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「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제3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<u>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</u>)	제3조(<u>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지정 등</u>)
① (생략) <u><신설></u>	① (현행과 같음) ②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“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광역시, 특별자치시 및 시·군·구 중에 서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제 1항의 기준을 고려하여 인구감 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 의·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 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을 말 한다.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<u>인구감소지역</u> 을 지정하려 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관계 시·도지사와 협 의해야 한다.	③ ----- 제1항 및 제2항 -- <u>인구감소지역 및 인구 감소관심지역</u> (이하 “인구감소 지역등”이라 한다)----- -----.
③ (생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19조(<u>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 원</u>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<u>인구감</u>	제19조(<u>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 원</u>) ① ----- ----- <u>인구감</u>

소지역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
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5.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의
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
위한 데이터의 연계·제공·
활용·분석, 의사결정 및 협업
에 관한 업무 지원

6.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발
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
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공모
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경우 해
당 사업의 일정 부분을 인구감
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④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·
도 지방시대지원단(이하 “시·
도 지방시대지원단”이라 한다)
은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
자로부터 법 제22조제2항 각 호
의 승인·허가(이하 이 조에서
“허가등”이라 한다) 신청 사무
에 대하여 문서로 지원을 요구
받았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해
야 한다. 다만, 즉시 처리가 가

소지역등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인구감소지역등 -----

6. ----- 인구감소지역등---

② -----

----- 인구감
소지역등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인구감소지역등-----

-----.

능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 지 않을 수 있다. ⑤ ~ ⑦ (생 략)	----- -----. ⑤ ~ ⑦ (현행과 같음)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4451